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 차

1. '96 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	83
가. 예산(안) 편성방향 .....	83
나. 예산(안) 총규모 .....	84
2. '96 예산(안) 규모 .....	85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	85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90
3. 검토내역 .....	96
4. 검토의견 .....	104

# 1. '96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 가. 예산(안) 편성중점방향

- '96 예산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번째 예산으로서 「지방화시대 건전재정 운용의 틀」 구축
-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국가와 지방, 도와 시군간의 재정역할을 확립하면서 계획성 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효율성 증대

## □ 편성 기준

### <세입예산>

- 지방세는 '94 징수실적 감안 적정 수준 계상
- 순세계잉여금은 '94 지방세초과징수분 감안 최대한 계상
- 사업소 이전에 따른 재산매각대 모두 계상
- 국고보조금, 양여금은 내시에정액,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 수준에서 추정계상

### <세출예산>

- 주민소득증대,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최대한 계상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경비 우선 반영
- 농촌대책에 따른 지원금 최대한 계상
- 시·군 또는 민간이 부담할 경비 지원폐지 또는 축소
- 새로운 건물신축비 지원 지양
- 해외여행경비 등 불요불급경비 대폭축소

## 나. 예산(안) 총규모

○ 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제1회 추경)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75,556,690	100	(670,890,492) 585,114,186	100	190,442,504	32.5
○ 일반회계	565,506,620	72.9	(540,248,701) 456,720,409	78.1	108,786,211	23.8
○ 특별회계	210,050,070	27.1	(130,641,791) 128,393,777	21.9	81,656,293	63.6

- '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755억 5,69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5,581억 1,418만 6천원보다 32.5%가 증액된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3.8%인 1,087억 8,621만 1천원이 증가한 5,655억 662만원임.
-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3.6%인 816억 5,629만 3천원이 증가한 2,100억 5,007만원 규모임.

## 2. '96 예산(안) 규모

###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제1회 추경 )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75,556,690	100	(670,890,492) 585,114,186	100	190,442,504	32.5
일 반 회 계	565,506,620	72.9	(540,248,701) 456,720,409	78.1	108,786,211	23.8
· 지 방 세	132,041,000	17.0	(136,005,000) 124,005,000	21.2	8,036,000	6.5
· 세 외 수 입	92,122,771	11.8	(88,597,515) 74,918,141	12.8	17,204,630	23.0
-경상적세외수입	9,710,828	1.2	(10,661,751) 10,543,836	1.8	△ 833,008	△7.9
-임시적세외수입	82,411,943	10.6	(77,935,764) 64,374,305	11.0	18,037,638	28.0
· 지 방 교 부 세	128,586,000	16.6	(132,209,200) 112,708,000	19.3	15,878,000	14.1
· 지 방 양 여 금	57,182,308	7.4	(46,943,067) 43,900,752	7.5	13,281,556	30.3
· 보 조 금	153,566,541	19.8	(111,116,919) 101,188,516	17.3	52,378,025	51.8
· 지 방 채	2,008,000	0.3	(25,377,000) 0	0	2,008,000	100
특 별 회 계	210,050,070	27.1	(130,641,791) 128,393,777	21.9	81,656,293	63.6
· 공기업특별회계	186,524,660	24.1	(108,989,829) 107,608,563	18.4	78,916,097	73.3
-지역개발기금	129,218,124	16.7	(56,253,914) 56,253,914	9.6	72,964,210	129.7
-공영개발사업	57,306,536	7.4	(52,735,915) 51,354,649	8.8	5,951,887	11.6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제1회 추경 )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 기타특별회계	23,525,410	3.0	(21,651,962) 20,785,214	3.6	2,740,146	13.2
- 의료보호기금	18,766,687	2.4	(16,410,051) 16,356,234	2.8	2,410,453	14.7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운영관리	2,200,000	0.3	(1,910,526) 1,866,355	0.3	333,645	17.9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2,558,723	0.3	(3,340,385) 2,562,625	0.4	△ 3,902	△ 0.2

-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8%인 1,087억 8,621만 1천원이 증가한 5,655억 662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9.6%인 2,241억 6,377만 1천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이 60.0%인 3,393억 3,484만 9천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인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5.1%인 25억 7,800만원이 증액된 528억 6,800만원이고,  
등록세는 전년도보다 6.5%인 39억 4,800만원이 증액된 647억 2,900만원이며,  
면허세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으로 전년도 대비 26.4%인 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51억 7,400만원임.  
또한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7.3%인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49억원이며,  
지역 개발세는 12억 7,000만원임.
-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3.2%인 9,700만원이 증액된 31억원 규모임.
-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 재산 임대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 1,276만 4천원보다 56.3%인 6,353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1,276만 4천원으로 조령산 자연휴양림 임산물 판매장 및 매점 임대수입과 도민교육원 구내식당 임대에 따른 수입이 증가됨.
  - 사용료 수입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36억 5,918만 6천원보다 2.3%인 8,526만 1천원이 감소된 35억 7,392만 5천원으로 하천사용료 수입이 감소됨.
  -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 33억 1,514만 8천원보다 39.3% 감소된 20억 1,087만 2천원임.
  -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 전년도 예산 6억 3,731만 8천원보다 16.9%인 1억 741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4,473만 2천원으로,  
이는 종축장의 우유외 4건등의 수입이 증가됨.
  -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28억 1,942만원보다 13.7%인 3억 8,558만원이 증가된 32억 5백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됨.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60% 증액된 400억원이 계상됨.
  - 용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 전년도 예산 8억 5,536만 8천원보다 3.3%인 2,860만 4천원이 증가된 8억 8,397만 2천원으로,  
이는 주택사업 용자금 회수가 증가됨.

-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7,847만 4천원보다 10%인 1,784만 5천원이 증가됨.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예산 253억 576만 6천원보다 31.1%인 78억 7,825만원이 증액된 331억 8,401만 6천원으로 농촌진흥원 재산 매각대 수입등이 증가됨.
- 기금수입은 1억 98만 3천원이 증가된 5억 112만 2천원 규모임.
- 부담금은 26억 1,450만 6천원이 감소된 60억 8,872만 2천원 규모임.
-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 35억 8,133만원보다 62.5%인 22억 3,953만 8천원이 감소된 13억 4,179만 2천원으로 이는 순환수렴장운영수익금이 감소됨.
-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5,000만원보다 44%인 6,600만원이 증가된 2억 1,600만원임.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1.6%인 815억 3,758만 1천원이 증액된 3,393억 3,484만 9천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4.1%인 158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8,6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1,130억원과 특별교부세 155억 8,600만원이며,
-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30.3%인 132억 8155만 6천원이 증액된 571억 8,230만 8천원임.
- 국고보조금으로는 전년도보다 51.8%인 523억 7,802만 5천원임 증액된 1,535억 6,654만 1천원임.

○ 지방채에 있어서는

충주담 광역상수도 분담금 20억 800만원을 계상함.



□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액 1,283억 9,377만 7천원보다 63.6%인 816억 5,629만 3천원이 증액된 2,100억 5,007만원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62억 5,391만 4천원보다 129.7%인 729억 6,421만원이 증액된 1,292억 1,812만 4천원으로 용자금회수 수입 및 공채발행예산액등이 증가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13억 5,464만 9천원보다 11.6%인 59억 5,188만 7천원이 증액된 573억 653만 6천원으로 이는 가경3지구 분양택지 매출수익이 증가된데 기인됨.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63억 5,623만 4천원보다 14.7%인 24억 1,045만 4천원이 증액된 187억 6,668만 7천원으로 의료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된데 기인함.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8억 6,635만 5천원보다 17.9%인 3억 3,364만 5천원이 증액된 22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액이 증가됨.

○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5억 6,262만 5천원보다 0.2%인 390만 2천원이 감액된 25억 5,872만 3천원임.

##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제1회 추경 )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75,556,690	100	(670,890,492) 585,114,186	100	190,442,504	32.5
일 반 회 계	565,506,620	72.9	(540,248,701) 456,720,409	78.1	108,786,211	23.8
· 인 건 비	47,940,892	8.5	(42,861,974) 40,366,457	8.8	7,574,435	18.8
· 물 건 비	40,455,445	7.2	(32,841,999) 31,764,823	7.0	8,690,622	27.4
· 이 전 경 비	132,861,151	23.5	(120,845,984) 113,965,750	25.0	18,895,401	16.6
· 자 본 지 출	317,827,004	56.2	(318,906,078) 252,122,274	55.2	65,704,730	26.1
· 용자 및 출자	7,584,000	1.3	(7,678,000) 3,170,000	0.8	4,414,000	139.2
· 보 전 재 원	2,320,027	0.4	(1,815,143) 1,815,143	0.4	504,884	27.8
· 내 부 거 래	6,946,023	1.2	(6,398,294) 5,698,294	1.2	1,247,729	21.9
· 예비비 및 기타	9,572,078	1.7	(8,901,229) 7,817,668	1.7	1,754,410	22.4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제1회 추경 )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특 별 회 계	210,050,070	27.1	(130,641,791) 128,393,777	21.9	81,656,293	63.6
· 지역개발기금	129,218,124	16.7	(56,253,914) 56,253,914	9.6	72,964,210	129.7
· 공영개발사업	57,306,536	7.4	(52,735,915) 51,354,649	8.8	5,951,887	11.6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2,558,723	0.3	(3,340,385) 2,562,625	0.4	△ 3,902	△0.2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2,200,000	0.3	(1,910,526) 1,866,355	0.3	333,645	17.9
· 의료보호기금	18,766,687	2.4	(16,401,051) 16,356,234	2.8	2,410,453	14.7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67억 2,040만 9천원보다 23.8%인 1,807억 8,621만 1천원이 증액된 5,655억 662만원 규모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 인건비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8.8%인 75억 7,443만 5천원이 증액된 479억 4,089만 2천원으로

이는 공무원 정원이 증원됨과 기본급 3% 인상분, 호봉조정 2%, 일용인부임 단가가 15,300원에서 16,300원으로 인상된데 기인함.

- 물건비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27.4%인 86억 9,062만 2천원이 증액된 404억 5,544만 5천원으로

이는 인원증원에 따른 여비 증액분, 의원님들의 기준경비, 명절 휴가비 인상 교통비 지급등에 따른 경비가 증액된데 기인함.

- 이전경비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6.6%인 188억 9,540만 1천원이 증액된 1,328억 6,115만 1천원으로

이는 인원증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산림개발기금출연, 지방도 정비사업 및 '94 수해복구기채, 군도개발환율 변동에 따른 이자등이 증액된데 따른 것임.

-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6.1%인 657억 473만원이 증액된 3,178억 2700만 4천원으로

이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광역상수도 건설비분담금, 부지매입비등이 증액된데 기인됨.

- 용자 및 출자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39.2%인 44억 1,400만원이 증액된 75억 8,400만원으로

이는 주택개량사업 용자금이 증가된데 따른 것임.

- 보전재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27.8%인 5억 488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2,002만 7천원으로,

이는 IBRD군도 개발 차관이 상환된데 기인함.

-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21.9%인 12억 4,772만 9천원이 증액된 69억 4,602만 3천원으로,  
이는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증액된데 기인함.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보다 22.4%인 17억 5,441만원이 증액된 95억 7,207만 8천원으로,  
이는 법정예비비 1.3%와 중앙지원사업비 도비부담 유보분도 포함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292억 1,812만 4천원으로

- 회계장부정리 및 공채정리 일용인부임등 4,529만 6천원
- 91발행 공채이자 상환외 1건 79억 8,942만 6천원
- 상수도 사업 2건 60억 1,600만원
- 도시도로사업 1건 20억원
- 공영개발사업 3건 277억원
- 기타 경영 수익사업 5건 160억원
- '91년도 공채 대출 상환원금 231억 4,584만 4천원
- 사업 및 자본 예산 예비비 463억 2,155만 8천원을

계상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37억 653만 6천원으로

- 공영개발사업비용에 있어서는
  - 관리사업비 9억 5,254만 4천원
  - 차입금(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사모공채)지급이자 39억 6,150만원
  - 예비비 1억 9,775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 용지조성 사업비 (가경지구 시설비, 택지개발사업등) 196억 4,857만 5천원
  - 공기구 비품비 2,235만 1천원
  - 고정부채상환 277억원
  - 기타 자본적 지출 26억 171만 9천원
  - 예비비 22억 2,209만 2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7억 6,668만 7천원으로

· 사무비 7,947만 7천원

· 의료보호비 (저소득의 의료보호대상자 89,112명의 진료비)

185억 1,034만 6천원

· 예비비 1억 7,686만 4천원을

계상함.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2억원을

계상함.

-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사업 용자금 지원사업 25억 5,800만원

· 사업계획서 유인 72만 3천원을

계상함

### 3. 검토내역

#### □ 세입예산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755억 5,69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2.9%인 5,655억 662만원, 특별회계가 27.1%인 2,100억 5,007만원입니다.

#### < 일반회계 >

-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320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921억 2,277만 1천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3,393억 3,484만 9천원임.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6.5%인 80억 3,600만원이 증액된 1,320억 4,100만원으로

- 취득세, 등록세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과 '9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토지건물등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을, 부동산 경기의 여건 변동, 과세물건의 증가 추이등을 감안하였고,
- 면허세는 과세물건의 증가추세와 절대적인 자동차면허 신장율을 감안하여 26.4% 증가한 목표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96징수전망등을 감안하여 7.3%가 증가한 목표액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과년도 수입은 체납총액을 심층분석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 3.2%가 증가한 목표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2.9%인 172억 463만원이 증액된 921억 2,277만 1천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 재산임대 수입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기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 수입의 증가



- =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 사용료,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도로관리 사업소 중기 사업등을 계상
- = 수수료 수입은 토목시험 수수료, 시험응시수수료등 계상
- = 사업장 수입은 농촌진흥원, 잠업검사소, 종축장의 사업의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한 수입증가
- =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증가요인임.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 = 재산매각 수입은 잠업검사소 및 농촌진흥원 재산매각에 따라 수입이 증가 되었으며,
- = 이월금은 '95결산 이월금인 세입초과 징수 및 세출집행 잔액을 계상하였고
- = 용자금 회수수입은 주택사업 용자금 회수증가됨과
- = 잡수입의 감소는 순환수령장 운영수수료 수입이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되었으며,
- =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전년도보다 25.2%인 1억 98만 3천원이 증가된 5억 112만 2천원임.
- =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44%증액 계상됨.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1.6%인 815억 3,758만 1천원이 증액된 3,393억 3,484만 9천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4.1%인 158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8,6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1,130억원과 특별교부세가 155억 8,600만원이며,

-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0.3%인 132억 8,155만 6천원이 증가된 571억 8,230만 8천원으로 이는,

- 정주권 개발사업비 60억 7,600만원
- 오지개발사업비 49억 159만 6천원
-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900만원

·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02억 3,200만원
·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205억 4,100만원
· 지역개발사업비	80억원
· 청소년 육성사업비	8억 2,350만원
· 군도정비 사업비	12억 3,998만원
· 농어촌도로 사업비	2억 423만 2천원
· 문화마을 조성	47억 7,400만원등이

계상됨.

- 국고 보조금으로는 전년도 대비 51.8%인 523억 7,802만 5천원이 증액된 1,535억 6,654만 1천원이 계상됨.

< 특별회계 >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00억 5,007만원으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865억 2,466만원, 기타 3개 특별회계가 235억 2,541만원임.

공기업 특별회계중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292억 1,812만 4천원으로,

· 용자금 이자 수입	138억 4,297만 3천원
· 예금이자	20억원
· 채무 면제이익	2,000만원
· 용자금회수 수입	588억 5,515만원
· 공채발행 예상액	410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 과목존치	1천원이며,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3억 653만 6천원으로,

· 용지매출수익	186억 7,551만 1천원
· 예금이자 수입	1억원
· 가경 3지구 선수금	108억 3,101만 8천원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77억원
· 과목존치	7천원이며,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7억 6,668만 7천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1억 6,000만원
· 시군 대불금 회수액	900만원
· 전입금	36억 9,433만 8천원
· 잡수입	1억 2,600만원
· 국고보조금	147억 7,734만 9천원이며,

-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환경기초 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 이는 '96 대청호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부담액임.

-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은 25억 5,872만 3천원으로

- 용자금 이자수입 1억 3,509만 3천원
- 순세계 잉여금 2,363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4억원임.

□ 세출예산

'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7,755억 5,669만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55억 662만, 특별회계가 2,100억 5,007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 일반행정비	632억 1,084만원
- 사회개발비	1,550억 1,191만 3천원
- 경제개발비	2,421억 7,311만 5천원
- 민방위비	236억 4,408만 9천원
- 지원 및 기타 경비	814억 6,666만 3천원

이며,

○ 주요 경비별로는

첫째,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1,743억원으로

- 인건비	664억원
- 경상경비	265억원
- 지방채상환	129억원
- 징수교부금	589억원
- 예비비	96억원이며,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은 224억원으로

-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	133억원
-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분담금	20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
- 농어촌 소득 재산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과

세제, 중점투자 사업비는 3,688억원으로

-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 및 구호사업, 근로자 복지, 청소년 육성, 보건의료기반 확충, 환경 보전등) 688억원
- 농수산분야(농업생산기반 확충, 농가소득증대사업,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촌 생활환경 개선등) 1,352억원
- 도로·교통분야(지방도 보수정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도시가로방 정비 교통 안전시설 정비유지) 629억원
-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분야(하천수질보전, 쓰레기 매립장 정비, 산림환경보전등) 420억원
- 지역개발분야(관광진흥, 공업육성 및 중소기업진흥, 주거환경개선, 상하수도 정비등) 360억원
- 문화·체육분야(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보존, 체육진흥, 충북 100주년 기념사업) 149억원
- 민방위 소방분야(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소방시설 장비 보강 및 의용 소방대 운영등) 29억원
- 일반행정분야(행정종합정보통신망 시설등) 61억원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 업무관리비(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등) 9억 5,200만원
  - 지급이자(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사모공채) 39억 6,100만원
  -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 및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등 196억 4,900만원
  - 공기구 비품비 2,200만원
  - 고정부채 상환 및 기타 자본적 지출 303억 200만원
  - 예비비 24억 2,000만원이고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기금관리비,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	80억 3,500만원
· 상수도사업 2건	60억 1,600만원
· 공영개발 사업 1건	277억원
· 도로사업 1건	20억원
· 경영수익 사업 및 기타 5건	160억원
· 공채매출 상환원금	231억 4,600만원
· 예비비	463억 2,200만원이며,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의료 보호대상자 89,112명의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용자금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고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시설 운영관린 특별회계는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과 본도의 관련단체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22억원을 2개의 하수처리장과 5개의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비로 계상함.

## 4. 검토의견

1996년도 충청북도 예산은 일반회계 5,655억 662만원, 특별회계 2,100억 5,007만원, 총 7,756억원의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5%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9.6%로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지역개발, 산업화가 지체되는 반면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는 증폭되어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등 지방재정수요는 어느때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몇가지 의견을 보고드리겠음.

### 첫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강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려면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한 관건이므로 우리도에 산재한 특수세원을 지방세화,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지역경제활성화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등을 통한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이 156건에 405억 1,19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수혜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별 재원배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도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따라 재원배분의 적정을 각기 다르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공익을 더 도모할 수 있고 도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될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 셋째, 각급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시찰·견학등에 대하여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과 연구관계를 발표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는 노력한 만큼 재정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매칭펀드」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나 열악한 재정면에서 투자 대 성과, 낭비 요인여부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네째, 경상경비의 포괄계상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경상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등 경직성경비이면서 또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토록 되어 있는바, 각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외에 일부 비목에 포괄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기 획 관 리 실	내 무 국	증 평 출 장 소
430,000	300,000	56,000

다섯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96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할 예산액은 11억 81만원으로 정액 보조단체 (13개)에는 14%인 1억 5,081만원, 임의 보조단체에는 86%인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각 단체별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향후 보조금 책정은 활동실적과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여섯째, 사업비 부담의 타당성 문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또는 장려성 사업은 스스로의 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재정적 활력제고 차원에서 지원됨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기부담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례 또는 시,군 부담없이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례는 검토되어야 하겠음.

일곱째, 순세계잉여금 처분의 부적정

'94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토록 하여야하나

내년도에도 2.5%만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례의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덟째, 예비비 예산에 대하여

재정활동의 확대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등 예비비의 증가요인도 예산되지만 예산규모의 1.3%로 계상토록 되어있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규정에 비추어 다소과다한 규모의 예비비책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예비비는 그 성격상 집행부가 이를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가 승인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엄격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반면 의료원은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보고 있어 적재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료공인법인으로서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고 원가절감, 재산성 확보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자율경영능력이 확보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번째, 출연금에 대하여

일부자치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중 조례등 관련법규재정을 전제로 계상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